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2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2
※ 참고자료	6
1.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갈등 발생 사례	6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7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Ⅲ.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보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⑤ (생략)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u><신설></u> <u><신설></u>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 —————. ————— —————. —————.
⑦ (생략)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승인기관장등(국가기관, 지자체 등)¹⁾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부재한 상황임²⁾.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제기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결정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되었음³⁾).

또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및 협의 내용 통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요 건	이의신청 가능여부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에게 보완·조정 요청	불가	-
■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심각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에게 재검토 통보	가능	제28조 제6항
■ 환경부장관이 사업자 등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	가능	제31조 제1항 ⁴⁾

※ 출처: 환경부

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3) 참고자료1.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갈등 발생 사례

4)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 동 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8조제3항 후단 중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면 재검토 통보 및 협의 내용 통보의 경우과 같이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보완·조정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한 갈등 발생 사례

□ 사업개요

- 사업명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 사업시행자/궤도사업허가 : 양양군/양양군
- 사업규모 : 교통·운수시설(공원시설) 1개소 신설
 - 삭도 길이 L=3.5km, 상·하부정류장 및 중간지주 6개

□ 경위

- ('15.8)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 ('16.7~'20.12) 평가서 접수, 1차 보완, 부동의 통보, 행정심판 결정*
 - * 부동의 협의내용('19.9월)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심판 인용재결
- **(‘21.4~‘21.7) 2차 보완 요청**(원주청→양양군), **고충민원 제기***(지역주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양양군→중앙행심위)
 - * 입지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이 실행 불가능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사 요구라며 민원제기
 - ** 재보완 요청은 불이행시 반러라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심판 청구
- ('22.5~6) 권익위 주재 실무회의*를 거쳐 재보완 세부이행방안 합의
 - * 재보완 요구 항목의 분야별 협의 및 조정방안 마련 목적
- **(‘22.11~12) 고충민원 조정***(국민권익위, 11.30), **행정심판 취하**(양양군, 12.6)
 - * (원주청) 재보완 요구내용 구체화 / (양양군) 구체화하여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23.2.2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원주청→양양군)

주요항목	보완 요청 사항(2차, '21.4)	권익위 중재 합의 결과('22.6)
산양	• 4계절 조사, GPS를 이용한 행동권 분석	• 2계절 조사, GPS조사는 향후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협의 후 진행
식생	• 전 사업부지 조사, 식생보전 등급 재평가	• 시설 설치지역 조사, 식생보전등급은 국립공원 연구원의 자료 활용
지질시추	• 이상 지질대 시추조사	• 안전성 검사시 추후 실시
토지이용	• 훼손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계획 수립	• 상부정류장 위치 조정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재수립
시설안전	• 풍속 측정 및 안정성 확보	• 자동기상측정자료, 공단 자료 활용